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백남환 의원)

의안 번호	15-81
----------	-------

발의년월일 : 2015. 8. 25.

발 의 자 : 백남환·강희향·김윤정·
송병길·유호렬·이동주·
이봉수·이학래·차재홍·
한일용허정행의원(11명)

1. 개정이유

구청장이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고,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종전 1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사업비에서 모든 민간위탁 대상사무로 확대 하였으며,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을 구분함은 물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위원의 해당 안건 심사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 하였고, 또한 연간 구비 1억 원 이상인 위탁사업에 대해 기간연장을 위해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재계약 시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고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감사 규정 등을 마련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음.

2. 주요내용

- 가.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을 종전 총사업비가 1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사업비에서 모든 민간위탁 대상사무로 확대 실시(안 제4조제1항)
- 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내용(복지, 문화, 교육, 취업지원, 교통, 청소, 경비 등) 신설(안 제4조의2)

- 다. 구청장이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사무의 내용, 위탁기간, 소요예산을 수탁기관 선정전에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구의회 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을 신설함.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함(안 제4조제3항)
- 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대상 업무, 위원회 구성, 위원회 위원 임명 또는 위촉,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 위원회 위원해촉 규정을 둠(안 제7조)
- 마. 위원이 심사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 바. 구청장은 연간 구비 1억 원 이상인 위탁사업에 대한 기간 연장을 위해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재계약 시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함(안 제8조제5항)
- 사.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 실시(안 제13조의2)

3. 관계법규

- 가.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 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민간위탁의 기준)

4.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기타사항

- 가. 입법예고 : 2015.8.26 ~ 8.31(제출된 의견 없음)
- 나.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계되지 아니하고 총사업비가 1억 원을 초과하지”를 “관계되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호에 해당되는”을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구청장은 행정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사무의 내용, 위탁기간, 소요예산에 대하여 수탁기관 선정전에 위임사무는 미리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

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르신·장애인·여성·아동·청소년 등 복지를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2. 문화·관광·방송·영상 등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3. 교육·도서관·체육·공원 등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4. 근로자복지, 자활, 취업지원 등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5. 교통, 주차, 부설주차장 등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6. 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7.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7조제2항 중“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 주민대

표 및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를 “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전문가 : 1 ~ 2명
2. 해당분야 전문가 및 주민대표 : 1 ~ 3명
3. 마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 2명
4. 관계 공무원(단, 전체위원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제7조의2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제척·기피·회피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제6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사대상자(법인·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와 친족인 경우
2. 위원이 심사대상 안건과 관련해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심사대상 기관에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대상 기관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사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사대상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구청장은 연간 구비 1억 원 이상인 위탁사업에 대한 기간 연장을 위해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재계약 시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구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처리상황의 감사)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협약을 위반한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위탁의 승인 또는 동의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위탁 중인 사무는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승인 또는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2.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고 총사업비가 1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제2조(정의) ----- -----.</p> <p>1.·2. (현행과 같음)</p> <p>3. <u>“재위탁” 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u></p> <p>4. <u>“재계약” 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u></p> <p>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 ----- ----- ----- ----- <u>관계</u> <u>되지</u>----- ----- -----</p> <p>1. ~ 4. (현행과 같음)</p>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②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③ 구청장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사무의 내용, 위탁기간, 소요예산에 대하여 수탁기관 선정전에 위임사무는 미리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제4조의2(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르신 · 장애인 · 여성 · 아동 · 청소년 등 복지를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2. 문화 · 관광 · 방송 · 영상 등

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3. 교육·도서관·체육·공원 등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4. 근로자복지, 자활, 취업지원 등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5. 교통, 주차, 부설주차장 등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6. 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7.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7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 주민대표 및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

제7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③ 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신 설>

<신 설>

④ ~ ⑥

전문가 : 1 ~ 2명

2. 해당분야 전문가 및 주민대

표 : 1 ~ 3명

3. 마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 2명

4. 관계 공무원(단, 전체위원
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
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 및 공무원인 위원
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
간으로 한다.

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
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
고 인정된 경우

3. 제7조의2 각 항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제척
· 기피 · 회피 등을 하지 아
니한 경우

⑥ ~ ⑧

<신 설>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사대상자(법인·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와 친족인 경우
2. 위원이 심사대상 안건과 관련해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심사대상 기관에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대상 기관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사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사대상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제8조(협약체결 등) ① ~ ④(생략)

<신 설>

<신 설>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8조(협약체결 등) ① ~ ④(현행과 같음)

⑤ 구청장은 연간 구비 1억 원 이상인 위탁사업에 대한 기간 연장을 위해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재계약 시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3조의2(처리상황의 감사)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감사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협약을 위반한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